

Samil Flash

2007년 1분기 적용 주요 회계기준

2007년 1분기부터 적용되는 회계기준 및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.
각 회계기준에 대한 세부요약은 [별첨]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1.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

-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재작성
- 중요항목은 본문 또는 주석으로 표시하고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가능
- 비유동자산을 투자자산, 유형자산, 무형자산, 기타비유동자산으로 분류
- 자본조정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(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)은 별도 표시
- 계속사업손익과 중단사업손익 구분 표시
- 특별손익 구분 폐지
- 자본변동표가 추가(단, 최초적용 회계연도에는 당해분만 작성 가능)

2.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-5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

- 신뢰성 있게 공정가치를 측정할 수 없는 기업을 예시함.
- 상기를 제외하고는 공정가치 평가를 계속적으로 적용해야 하며, 상속·증여세법, 증권거래법 등 타 법률에 의한 가치평가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공정가치 평가로 인정하지 아니함.

3.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-2 종속회사,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인식에 관한 회계처리

-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는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, 하나의 일시적 차이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함.
- 일시적차이에 대한 측정시에는 소멸방법에 따른 세율을 적용함.

4. 기타의 기업회계기준

-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
-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
-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
- 기업회계기준서 제24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I
-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

자세한 내용은 한국회계기준원 홈페이지(www.kasb.or.kr)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(www.fss.or.kr)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
[별첨]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I

■ 대차대조표

- 중요항목은 본문 또는 주석으로 표시하고, 중요하지 않은 항목은 통합가능
- 유동성분류기준 재정립(BS일 기준 1년과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)
- 기타비유동자산 신설 -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, 유형자산, 무형자산, 기타비유동자산으로 구분
- 자본조정 - 자기주식(별도항목으로 구분)과 기타자본조정으로 구분
- 기타포괄손익누계액 - 자본조정 중 기타포괄손익누계액(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 등)은 별도 표시

<사례>

- 자산의 구분
 - 유동자산
 - 당좌자산
 - 재고자산
 - 비유동자산(구. 고정자산)
 - 투자자산
 - 유형자산
 - 무형자산
 - 기타비유동자산(ex. 이연법인세자산, 임차 보증금, 장기미수금 등)
- 부채의 구분
 - 유동부채
 - 비유동부채(구. 고정부채)
- 자본의 구분
 - 자본금
 - 자본잉여금
 - 자본조정
 - 기타포괄손익누계액
 - 이익잉여금(결손금)

■ 손익계산서

- 매출원가 산출과정 표시(본문 또는 주석)
- 계속사업손익과 중단사업손익(법인세효과 차감) 구분 표시
- 특별손익구분 폐지
- 포괄손익계산서는 주석사항으로 기재
- 유사한 거래에서 발생한 차익·차손 등이 중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계표시 가능
- 명예퇴직금은 그 성격에 따라 판매비와 관리비 또는 제조원가로 분류함. (【질의회신 06-040】 참조)

<사례>

법인세비용차감전계속사업손익	XXX
계속사업손익법인세비용	XXX
계속사업이익	XXX
중단사업손익(법인세효과 xxx)	XXX
당기순이익	XXX
주당손익	XXX

[별첨]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 작성과 표시 I, 계속

■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

- 용어요약 : 처분전이익잉여금·처리전결손금 → 미처분이익잉여금·미처리결손금

■ 자본변동표

- 자본변동표가 추가됨
- 이 기준서를 처음으로 적용하는 회계연도에는 당해 회계연도분만 작성할 수 있음.
- 사례

<u>자본변동표</u>					
<u>자본금</u>	<u>자본잉여금</u>	<u>자본조정</u>	<u>기타포괄손익누계액</u>	<u>이익잉여금</u>	<u>총계</u>
기초잔액					
변동사항					
기말잔액					

■ 기타

<u>포괄손익계산서</u>	
	<u>당기</u> <u>전기</u>
당기순이익	
회계정책변경누적효과	
기타포괄손익	
매도가능증권평가손익(법인세효과 XXX)	
해외사업환산손익(법인세효과 XXX)	
현금흐름위험회피파생상품평가손익(법인세효과 XXX)	
...	
포괄손익	

[별첨] 재무보고에 관한 실무의견서 2006-5 비상장주식 평가에 관한 회계처리

■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어 공정가치평가를 하지 않을 수 있는 예

- 설립후 7년이 경과하지 않은 회사
- 최초 투자 후 5년 미경과하고, 회사가치가 크게 변할 만한 특별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은 회사
- 자산규모 70억 미만인 비외감대상회사
- 현금흐름 추정이 어렵고, 업종 등 유사한 비교대상회사가 존재하지 않는 회사
- 채권금융기관에 의한 구조조정기업
- 평가자가 정당한 의무를 다했으나 피평가회사의 평가기초자료를 입수하지 못한 회사 등

■ 공정가치 평가시 평가방법

- 한 번 적용한 평가방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적으로 적용하여야 함.
- 평가접근법에는 이익접근법, 시장접근법, 자산접근법으로 구분되며, 가치평가자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세가지 접근법을 모두 고려하여야 함. (단, 자산접근법은 청산을 전제로 한 기업인 경우에 적절한 방법임)
- 상속·증여세법, 증권거래법 등 타 법률에 의한 가치평가의 경우 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는 공정가치 평가방법으로 인정하지 아니함.

■ 기타

- 평가시점과 결산일은 일치시키도록 함. 부득이 다른 경우에는 평가시점과 결산일 사이에 발생한 중요한 거래나 사건은 평가대상의 가치에 반영함.
- 주석공시사항 : 평가자, 공정가치 평가에 사용된 가정과 제한 조건, 비재무적 정보 및 재무정보의 분석 내용, 평가방법, 평가결론 등을 주석에 기재함.

[별첨] 회계기준적용의견서 06-2 종속회사, 지분법적용 피투자회사 및 조인트벤처의 지분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이연법인세 인식에 대한 회계처리

■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의 인식방법

- 종속회사 등에 대한 투자자산과 관련된 일시적 차이는 발생원천별로 구분하지 아니하고, 하나의 일시적 차이로 이연법인세 자산 부채를 인식함.

■ 일시적차이가 소멸하는 방법에 따라 세율이 다른 경우, 이연법인세 자산 또는 부채의 측정방법

- 가산할 일시적 차이
 - 배당으로 소멸되는 부분 → 배당에 따른 세율 적용(가산할 일시적 차이 중 손익항목과 관련된 금액을 한도로 함)
 - 배당으로 소멸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분 → 처분에 따른 세율 적용
- 차감할 일시적 차이 → 처분에 따른 세율 적용

■ 일시적차이가 자본으로 인식하는 항목과 손익으로 인식하는 항목을 모두 포함하는 경우 기간내배분

- 자본요소로 인한 부분과 손익요소로 인한 부분이 결합되어 일부의 효과가 상쇄되는 경우에도 기간내배분을 고려하여야 함.

[별첨] 기업회계기준서 제11호 중단사업

1. 중단사업의 주요 내용

■ 중단사업의 정의

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기업의 일부

- 사업의 중단을 목표로 수립된 단일계획에 따라 ①기업의 일부를 처분하거나, ②해당 사업에 속한 자산과 부채를 분할하여 처분하거나, 또는 ③사업자체 포기
- 주요 사업별 또는 지역별 단위로 구분가능
- 경영관리와 재무보고 목적상 별도로 식별가능

■ 최초공시사건

다음 중 먼저 발생한 사건인 최초공시사건의 발생시 중단사업 기준서를 적용함.

- 특정 사업에 속하는 대부분의 자산에 대한 구속력 있는 매각계약의 체결
- 경영자에 의한 공식적이며 구체적인 중단계획의 승인 및 발표

■ 중단사업에 대한 손익계산서상 표시 방법

- 계속사업손익과 구분하여 중단사업손익(법인세효과 차감)을 표시
- 중단사업손익의 구성 내역은 주석으로 공시
 - 사업중단직접비용 / 중단사업자산감액손실
 - 기타 중단사업으로부터 발생한 영업손익과 영업외손익

■ 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의 비교목적용 전기재무제표 재작성

- 최초공시사건일이 속하는 회계기간에 비교표시되는 재무제표는 중단사업에서 발생한 손익을 중단사업손익으로 구분하여 재작성

2. 경과조치

- 최초 적용 이전에 사업중단이 완료된 경우에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지 아니함. 기준서 적용 전 최초공시사건이 발생, 사업중단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회계연도 개시일을 최초공시사건일로 보아 회계처리함.

[별첨] 기업회계기준서 제22호 주식기준보상

1. 주식기준보상의 주요 내용

■ 적용범위

- 모든 주식기준보상거래에 적용. 다만, 우리사주조합원 우선배정제도 제외

■ 주식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

• 보상원가의 측정

- 종업원과의 거래: 부여일 기준 지분상품의 공정가치
- 비종업원과의 거래: 재화·용역 제공받는 날 기준 재화·용역의 공정가치(원칙)

• 가득조건별 보상원가 인식

- 용역제공조건(예: 3년 근무): 용역제공기간에 배분
- 비시장성과조건(예: 목표이익): 기대가득기간에 배분, 추후 수정가능
- 시장성과조건(예: 목표주가): 기대가득기간에 배분, 추후 수정불가

• 가득기간 중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더라도 보상원가를 재계산하지 않음.

- 단순화된 회계변수평가모형에 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지 아니함.

■ 현금결제형 주식기준보상거래

- 부채의 공정가치로 측정. 다만, 비상장회사의 경우 내재가치로 측정할 수 있음.

■ 선택형 주식기준보상거래

- 거래상대방에게 선택권이 있는 경우 복합금융상품으로 인식하며, 부채요소의 공정가치를 차감하여 자본요소의 공정가치를 측정함
- 회사에 선택권이 있는 경우 현금지급 의무의 유무에 따라 부채·자본으로 인식함.

2. 적용시기 및 경과조치

- 2006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회계연도에 합의되는 주식기준보상약정 및 조건변경, 취소 또는 중도청산이 이루어지는 경우 조건변경 등에 대해 적용. 기준서 시행일이 속하는 회계연도 말 현재 가득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기준보상약정에도 적용가능.

- 최초 적용시 비교표시되는 전기재무제표는 재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.

[별첨] 기업회계기준서 제23호 주당이익

1. 주당이익의 주요 내용

■ 적용범위

- 주권을 상장하고 있지 않거나 상장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‘주당이익’ 공시 생략 가능함.

■ 표시

-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을 계속사업이익과 당기순이익에 대하여 계산하고 손익계산서 본문에 표시함.
- 중단사업에 대한 기본주당이익과 희석주당이익은 주석으로 공시

<사례>

당기순이익	XXX
주당순이익	
기본주당계속사업순이익	XX
기본주당순순이익	XX
희석주당계속사업순이익	XX
희석주당순순이익	XX

■ 기본주당이익

- 보통주에 귀속되는 이익에서 다음의 금액을 차감함.
 - 우선주의 주식할인발행차금을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의하여 상각하는 금액
 - 전환우선주 발행기업이 전환유도를 위해 추가적으로 지불하는 대가
 - 우선주 매입시 장부금액과 매입금액의 차이금액
- 보통주로 반드시 전환하여야 하는 금융상품이나 계약은 보통주식수에 포함

■ 희석주당이익

- 기중에 희석 잠재적보통주가 행사 또는 전환된 경우에는 기초부터 행사일의 전일 또는 전환(간주)일의 전일까지 희석주당이익을 계산하기 위한 주식수에 포함

2. 경과조치

- 이 기준서 적용 이전기간의 주당이익에 대하여는 무상증자 등으로 소급적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수정하지 아니함.

[별첨] 기업회계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

1. 연결재무제표의 주요내용

■ 용어변경: 외부주주 → 소주주주

■ 연결재무제표 작성양식 변경

- 기업회계기준서 제21호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의 적용에 따라 연결재무제표 양식도 동일하게 변경
- 당기순이익을 지배회사지분순이익과 소주주지분순이익으로 구분하여 표기

기준서 제25호 연결재무제표		연결재무제표준칙	
당기순이익	XXX	총당기순이익	XXX
지배회사지분순이익	XXX	외부주주지분순이익	(XXX)
소주주지분순이익	XXX		
	XXX	연결당기순이익	XXX

- 종속회사손실로 소주주지분이 "0" 이하가 될 경우에는 "0" 이하의 부분을 부(-)의 소주주지분으로 하여 자본에서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. 단 계약 등으로 배분비율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부(-)의 소주주지분을 산정
- 회계연도 중에 종속회사를 매수하는 경우 종속회사의 전체 손익을 항목별로 연결손익계산서에 반영하고 종속회사 매수일 직전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순이익(손실) 일괄 차감하는 형식으로 표시
- 회계연도 중에 종속회사를 매도하여 연결실체에서 제외되는 경우 중단사업에 관한 기준서에 따라 처분한 날까지 발생한 손익을 연결손익계산서에 별도의 항목으로 표시
- 회계정책의 일치 시 연결실체 내 모든 회사가 중소기업특례에 관한 기업회계기준의 적용대상이며 당해 기준을 적용하여 개별재무제표를 작성하기 때문에 회계정책이나 회계추정방법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치시키지 않을 수 있다고 명문화함.

2. 적용시기

- 2007년 12월 31일 이후 최초로 종료하는 회계연도부터 적용
(즉, 회사가 12월 법인인 경우에는 2007년 연결재무제표부터 적용함)

www.samil.com